

# 예 산 총 칙

2012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| 476,679,712 | 14,300,391 |
| 일반회계        | 410,532,937 | 12,315,988 |
| 특별회계        | 66,146,775  | 1,984,403  |
| 공기업특별회계     | 31,169,840  | 935,095    |
| 상수도사업       | 9,591,556   | 287,747    |
| 하수도사업       | 21,578,284  | 647,349  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| 34,976,935  | 1,049,308  |
| 의료급여기금      | 1,730,910   | 51,927     |
|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 | 248,010     | 7,440      |
|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| 234,800     | 7,044      |
| 농공지구조성      | 4,857,000   | 145,710    |
| 중소기업육성자금    | 5,285,292   | 158,559   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   | 1,175,322   | 35,260    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| 578,703     | 17,361     |
|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 | 14,900,000  | 447,000    |
| 기반시설        | 218,432     | 6,553      |
| 수질개선관리      | 2,932,466   | 87,974     |
| 농업발전기금      | 2,816,000   | 84,480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'세입·세출예산'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'채무부담행위조서'와 같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'계속비사업조서'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'명시이월사업조서'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829,535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8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